

제 283 호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양택식

편집 : 공보실장 김진호

전화 75-7834

1972. 9. 14.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
시보

차 례

이 영구보존되는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하였음.

1972. 9. 14.

서울특별시 시민과장

◎ 규 칙

제 1249 호 서울특별시 새마을노인회관 설치조례 시행규칙..... 3

◎ 고 시

제 126 호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인가 3

◎ 공 고

제 206 호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 4

제 207 호 서울특별시 면제조 공업협동조합 해산 5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규 칙

서울특별시립새마을노인회관설치조례시행
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1972년 9월 13일

◎서울특별시규칙제 1249 호

서울특별시립새마을노인회관
설치조례시행규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
새마을노인회관 (이하 "노인회관"이라
한다) 설치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관장등) ①노인회관에 관장 1
인을 두되 용산구 사회과장이 된다.
②관장 밑에 사무보조원 1인과 경비원
3인을 둔다.

제3조 (직무) 관장은 다음 사항을 장
리한다.

1. 노인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
한 사항
2. 노인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
3. 기타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

제4조 (사용대상) 노인회관의 사용은
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지부연합회 회원
과 기타 관장이 허가한 자로 하되
이를 무료로 한다.

제5조 (개관시간) 노인회관은 매일 9
시부터 6시까지 개관한다. 다만 관
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

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하거나 단
축할 수 있다.

제6조 (입관거부) 관장은 다음 각호의
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노인회관
의 입관을 거부할 수 있다.

1. 노인회관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
한다고 인정되는 자.
2. 질병자
3. 노인회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
우려가 있는자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서울특별시고시제 126 호

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(도로확장)
실시계획인가를 도시계획법 시행령제 27
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
시한다.
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건설국 관리
제1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
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1972. 9. 13
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시행지의위치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
사당동 18의 2, 3

2. 사업의종류및명칭 : 이수교~사당동간
도로확장공사

폭 35 m 연장 11,250m 중 위역위치 (5,841㎡) 3. 사업시행자: 서울특별시	4. 사업의착수및준공예정일: 72.9. ~ 72.10 5.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의조서,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및 관계인의주소 성명
---	---

번호	동명	분할전포지			분할후포지			소유자		관계인		
		지번	지목	지적	지번	지목	지적	주소	성명	주소	성명	내용
1	영등포구 사당동	18의2	도	26	18의2	도	26	영등포구 동작동 56	고점동			
2	"	18의1	답	508	18의3	답	151	" 방배동 478-18	전정순	사당동산 15	김규식 김낙서	가등기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06 호

도시계획용도지역일부변경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공원일부 변경
 과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결정 (건설
 부 고시제 394 호 (72.9.1) 을 도시계
 획법 제 12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

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
 도시계획과 및 경기도와 경기도 시흥
 군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
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1972. 9. 13.

서울특별시장

가. 공원변경조서

명칭	위치	면적 (㎡)		
		기성	변경	변경후
청계산 공원	영등포구 방배동, 양재동 및 시흥군 과천면, 막계리, 주암리	13,249,150	(감) 44,900	13,204,250

나. 유류저장설비결정조서

시설명	위치	면적 (㎡)
유류저장 및 송유설비	경기도시흥군과천면주암리	92,400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도면은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및 관할 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.

◎ 서울특별시공고 제 207 호

서울특별시면제조공업협동조합해산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63 조 제 1 항의
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합이 해산하였기
공고한다.

1972. 9. 14.

서울특별시장

- 1. 조합명 : 서울특별시면제조공업협동조합
- 2. 주 소 :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 5 가 490
- 3. 대표자 : 이 사장 윤 병 유
- 4. 해산사유 : 총회의결의 (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63 조 제 1 항)
- 5. 해산일자 : 72. 8. 12. 끝.